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속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2월 24일, 남영숙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3월 10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남영숙 의원

나. 제안이유

○ 경상북도는 현재 인구감소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내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변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발굴을 위해 관련 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등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 활력 증진과 지역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 개발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구성, 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9조)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인구감소지역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조영진)

□ 제안이유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경상북도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 시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7조[1]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1) 제7조(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개년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도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시·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
3.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시·군·구기본계획 간 효율적인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및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상호 간 협력에 관한 방안
5. 제11조에 따른 관할 시·군·구 간 생활권 연계·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5조에 따른 시·도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7. 시·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도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시·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9조에 따른 시·

- 이는 체계적이고 실행력 높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9조[2]에 따른 것입니다.

- 이는 경상북도에 적합한 인구감소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5조 각 호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5조[3]의

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도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시·도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가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29조(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기본계획,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 경제·사회·문화적 여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제30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유할 수 있다.

3) 제1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민만족도
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실태
3. 인구감소지역의 기반시설 또는 생활편의시설 등의 현황
4.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

실태조사 범위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6조 및 제7조는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4]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각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 문화・관광・체육 시설 설치 이전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4) 제9조(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32조에 따른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군・구위원회와 시・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도와 시・군・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위원회와 시・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법 제15조[5]), ▲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법 제27조[6]),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시행령 제13조 제2호[7])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종합의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3년 현재 경상북도의 인구는 2,600,492명으로 2015년에 비해 10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생으로 인해 출생아수 보다 사망자수가 많아져 자연감소가 증가 했고, 타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심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히, 청년층(15~39세)의 경우 2021년 전출자가 15만 1,149명인 반면에 전입자는 14만 2,933명으로 순유출 인구가 8,216명에

---

5)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6) 제27조(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휴시설의 상태 등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유휴시설의 복합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후·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제13조(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가·허가·승인·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 조치
2.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

달해 미래세대의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에는 2021년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8)]으로 지정되었으며, 2개 시·군이 관심지역[9)]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2022년 6월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주도적 지역발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0)].

❍ 이에,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변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개발과 시행을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2022년~2023년 경상북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7개 사업에 848억원을 편성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

8) 인구감소지역 :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9) 관 심 지 역 : ▲경주시, ▲김천시
10)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강화,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등을 명시함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